

**- 2022년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구축 사업 -
의료기기 제품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2022년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외 의료기기 관련 벤처,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제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01 ~ 2022. 12
- 지원예산 : 총 9,000천원(2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외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 참가비용 지원

산업 분야	지원 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의료 산업	사업화 지원	국내외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 참가지원	○ 의료기기관련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에 참가한 비용 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 : 등록비, 항공료, 숙박, 교통비, 부스임차료, 운송비 등 - 국내 박람회/전시회/부스 : 등록비, 기본부스 임차료 등	2개사	4,500천원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원기업 수는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금은 지원한도를 참고하여 작성(VAT 제외)

②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벤처, 중소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전후방 관련 기업(공고서 [붙임 2]에 해당)
 -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모든 기업 포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외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에 참가한 기업
 - 의료기기 기업 또는 의료기기 기업으로 업종전환, 업종추가, 품목추가 등을 희망하는 기업

③ 신청방법

- 신청서와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후 전북TP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연구동 3층 309호
 - (E-mail)naturaljin@jbtp.or.kr
 -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선정평가 전날까지 원본서류 도착 시 신청유효
-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유진 주임 연구원(063-260-9333)

④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필수제출 서류	[서식 1] 통합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서식 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4] 국내외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 5] 국내외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 참가 보고서 - 학회에서 발행한 책자 또는 PDF파일 ※ 신청서 양식에 학회 URL 작성 필수
	[서식 6] 국내외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 사업비 지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행사참가신청서 등)
	[공 통]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공 통] 신청기업의 통장사본
	[공 통] 중소기업확인증/중견기업확인증
	[공 통]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선택제출 서류	[서식 7]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의향서
	[기 타] 의료기기 또는 제조업 허가증(해당기업)
	[공 통] 해당제품 소개 자료(카달로그, 기타자료 등 제품관련 자료 포함) (해당기업)

⑤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서류 수시접수 및 사전검토→지원 자격 최종 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여부와 지원금 조정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지원사업명	평가 방법
의료기기 제품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심사 평가(서면 평가 진행) ※ 신청서 접수 상황에 따라 자격심사 평가 개최 ※ 상기평가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분야에 배점을 부여하여 부문별 점수를 합산 및 산출 후 선정
- 평가위원 전원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 70점 이상과제 선정

평가 분야		배점	주요 평가 항목
10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10	· 세부내용 및 소요비용 등의 적정성
		10	· 사업비 신청 서류의 정확성
	기술성 (20%)	10	· 신청 기술(제품)의 향후 발전 가능성
		10	· 국내외 시장개척 가능성
	기대효과 (30%)	15	·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효과
		15	· 고용창출 효과 및 의료기기 산업의 견인성
사업성 (30%)	15	· 의료기기 시장의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및 수익성(투자효과)	
	15	· 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사업화전략)의 적정성	
기타	부실학술대회여부	○ X	· 부실학술대회 여부(WASET, OMICS 주관 학술대회는 지원 제외 될 수도 있음)
※ 상세 내역 및 배점은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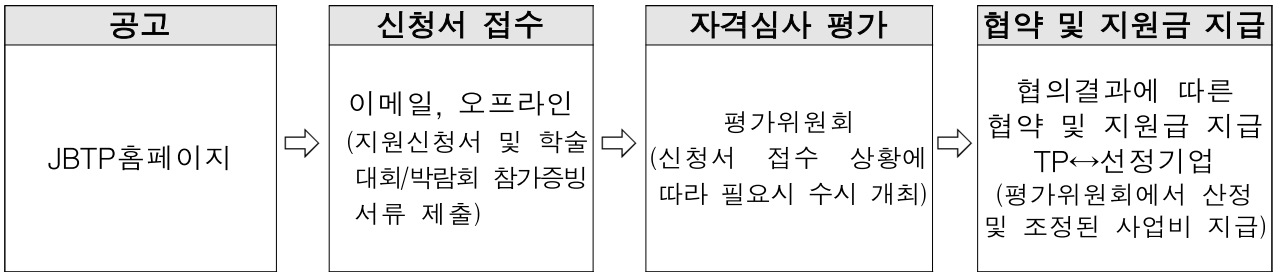
- 자격심사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수혜기업 선정 및 지원비용 조정

⑥ 선정제외 대상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 및 지산업육성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타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거짓인 경우
- 부도 등으로 인한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7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비 소진시까지(수시접수)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국내외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 지원의 신청자격 및 지원항목 등 세부사항은 [붙임 1]의 지원 기준 참조
- 영수증 원본 등은 사업기간 종료 후 반환
 - 학술대회, 국내 전시회/박람회/부스 참가 지원은 타 사업 또는 연구비와 중복지원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허위청구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과다청구 (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목적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붙임 1] 지원 기준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기준

1. 지원자격

가. 발표자

- 1) 발표자는 기업에 소속된 자를 말하며 기업과 업무와 관련한 계약한 자를 말한다.
- 2) 발표자는 포스터 또는 e-포스터구두 발표자를 포함한다.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 3) 포스터(e-포스터 포함) 발표자 경우에는 초록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할 수 있다.
- 4)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나. 좌장 또는 토론자

- 1) 좌장, 토론자는 기업,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선정한 자를 말한다.
- 2) 선정된 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항목별 기준표를 참조하여 실비 정산으로 한다.
- 3)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다. 초록제출

- 1) 초록채택메일(캡처본, 발표일정, 시간 확인 등)을 제출한다.
- 2) 공동저자일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명의를 확인되는 자료와 학회에서 발행한 프로그램북(책자, pdf 파일, URL)을 첨부, 제출한다.

2. 지원항목

가. 실비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지급 금액기준은 'VAT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래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1) 교통비

- 해외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 해외 학술대회 참가 시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간 왕복 교통비,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 렌터카 비용은 기타 교통비용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 지원불가(공항버스, 택시, 항공 등)
- 항공비용의 경우, 여행사의 인보이스, 이티켓만으로는 정산불가
-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출증빙
 - ① 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 사본을 첨부, 제출
 - ② 항공일정(일자, 목적지), 좌석등급을 알 수 있는 보딩패스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보딩패스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 확인 내역과 이 티켓을 제출
 - ③ 또는 항공사 발행 탑승확인서, 마일리지적립 확인서 / 여권사본, 출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사본을 제출
 - ④ 항공권은 이코노미만 지원가능하며 프리미엄 이코노미 지원불가.
 - 별도의 차액지불 없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할 경우,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증빙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해외 다른 지역 경유 시, 자필사인이 담긴 사유서와 함께 항공료 결제 시 최단거리요금(이코노미)이 함께 기재된 인보이스를 첨부, 제출해야만 해당금액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최단거리요금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 삭감됩니다.
 - ⑥ 공항-호텔간/ 호텔-행사장소간 교통비의 경우 지원가능하며, 이용시간, 출발지,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 제출에 한 함.

2) 등록비

-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비용을 송금한 날짜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출증빙
 - ① 등록 확인증, 개인 카드영수증, 송금확인서를 제출하며 카드영수증 제출 시 본인명의 카드번호 확인 가능할 카드앞면 사본을 제출한다.
 - ② 등록비에 포함된 식비는 식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 ③ 현장등록의 경우 지원을 불인정 한다.

3) 숙박비

- 국내의 경우 1박당 8만원, 해외의 경우 1박당 30만원 이내지원.
- 필요시 학술대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숙박비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출증빙
 - ① 카드영수증 제출 시 본인명의 카드번호 확인 가능한 카드앞면 사본 제출
 - ②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국가, 도시가 다른 곳에서의 숙박 지원불가
 - ③ 숙박바우처에 식비가 기재된 경우(아침, 점심, 저녁 구분 가능시) 식비 항목으로 정산 가능.
 - ④ 숙박비는 학술대회 하루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원이 가능함.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인 경우, 체크인-(화) / 체크아웃-(토)까지 지원가능함. 단, Early check -in / Late check -out Charge 지원불가

4) 식대

- 학술대회 숙박기간 동안에 1일 3식을 기준으로 지원.
- 식사시간대에 현지식당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최대 10만원,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
- 식비 영수증은 1식 1장만 정산되며, 1식 2장 이상일 경우, 그 중 큰 비용을 정산한다.

- 식비는 학회 전날 점심부터 학회 종료 다음날 점심까지 지원하며 식비 정산 기준은 06~12 시(조식), 12 시~18 시(중식), 18 시~ 다음날 06 시(석식)으로 한다.

※ 예시) 14 시 110 달러(중식) / 16 시 100 달러(석식)항목으로 식비 제출 시 중식비 110 달러만 정산.

-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출증빙

① 카드영수증 제출 시 본인명의, 카드번호 확인 가능한 카드앞면 사본 제출.

② 편의점, 슈퍼마켓, 카페, 음료 등의 기타 영수증은 지급불가, 영수증 없이 카드승인내역만 제출 할 경우 또한 지원이 불가.

5) 공통항목

- 모든 결제는 개인명의(본인) 카드만 지원 인정한다.
- 학술대회 관련하여 기업에서 지급한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인정한다.
-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제외

-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에서 주관하는 문제성 학술대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술대회 이외 박람회, 전시회 관련 신청 비용은 지원 제외한다.
- 의료, 의료기기와 관련없는 학술대회 지원 제외한다.
- 의료, 의료기기 관련 학술대회 중 관련성이 부족한 ‘향치료’ 등 학술대회 지원 제외한다.

4. 기타사항

- 증빙자료인 영수증 원본은 사업종료 후 요청시 반환함.
- 사업기간 중 신청기업이 증빙자료인 영수증 원본의 반환 요청 시 사본 반환함.

□ 국내 박람회/전시회/부스 참가 지원 기준

1. 지원자격

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국내 박람회/전시회/부스에 참가한 기업

1) 공고일 기준 스타트업·벤처, 중소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전후방 관련 기업(※ 공고 [붙임 1])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모든 기업 포함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10월 30일 사이에 국내 박람회/전시회/홍보 부스에 참가한 기업

3) 의료기기 기업 또는 의료기기 기업으로 업종전환, 업종추가, 품목추가 등 희망 기업

2. 지원항목

가. 실비 상당의 등록비, 기본부스 임차료, 운송료(운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지급 금액기준은 'VAT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아래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및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1) 등록비, 기본부스 임차료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

-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출증빙

① 등록 확인증, 개인 카드영수증, 송금확인서를 제출하며 카드영수증 제출 시 본인명의 및 카드번호 확인 가능할 카드앞면 사본을 제출한다.

② 현장등록의 경우 지원을 불인정 한다.

2) 공통항목

- 모든 결제는 개인명의(본인) 카드만 지원 인정한다.
- 학술대회 관련하여 기업에서 지급한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인정한다.
-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타 지원사업 및 학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제외

- 의료 및 의료기기와 관련없는 전시회/박람회/부스 지원 제외한다.
- 의료 및 의료기기 관련 행사 중 관련성이 부족한 ‘향치료’ 등 주제의 행사 지원 제외한다.
- 광고물 게재 및 인테리어성 공사비, 경비성 지출비용

4. 기타사항

- 증빙자료인 영수증 원본은 사업종료 후 요청시 반환함.
- 사업기간 중 신청기업이 증빙자료인 영수증 원본의 반환 요청 시 사본 반환함.

[붙임 2] 해당 품목분류표

- 아래 산업코드 또는 품목코드 해당 기업은 의료기기 전·후방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산업기술분류표			
산업코드	산업명	산업코드	산업명
500101	단백질의약품1	500702	형질전환생물체
500102	항체의약품	500401	중재적 치료기기
500103	백신	500402	방사선치료기
500104	균주/효소의약품	500403	수술용 치료기기
500105	바이오인공장기	500404	수술용 로봇
500106	세포치료제	500405	한방용 치료기기
500107	유전자치료제	500406	기타 치료기기
500108	원료의약품	500407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109	천연물의약품	500408	한방용 진단기기
500110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409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111	시약/진단체	500410	분자유전진단기기
500112	바이오생체재료	500411	초음파진단기기
500113	cGMP 생산기반기술	500412	X-ray 및 CT
500114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500413	MRI
500115	조직치료제	500414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201	바이오화학소재	500415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202	바이오플라스틱	500416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203	바이오화학촉매기술	500501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204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502	임플란트
500205	기능성 화장품소재	5005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206	기능성 식품소재	500504	생체재료
500207	바이오환경	500505	의료용 소재
500208	바이오매스	500506	재활훈련기기
500210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500507	이동지원기기
500211	표준화 및 인증기술	5005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212	바이오화학공정기술	5005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301	바이오공정기술	5005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302	바이오진단기기	500601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305	바이오분석기기	5006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306	기타 진단기기소재	500604	U-HER(electronic health record)
500307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6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308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6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분류표

품목코드	품목명	품목코드	품목명
27111sc1	- 방사선장치(임가공)	27111101	- X선사진기장치 - CT촬영기 - 혈관조형촬영장치 - 코발트치료기 - 컴퓨터단층촬영기(CT) - 의료용방사선장치 - 선형가속치료장치 - 방사선치료장치 - 방사선진단장치 - 감마사진기장치
27111900	- 애플리케이션(방사선장치의부품) - 보호용케이싱(방사선장치의부품) - 방사선장치의부품		
27111109	- X선용고압발생기 - X선스크린 - X선발생기 - X선관 - 방사선기타장치		
27111102	- 산업용방사선장치		
27112sc1	-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임가공)		
27112900	- 전기·전자식진단및요법기기부품		
27112209	- 체외충격파치료기 - 전기외과기기 - 이온요법기기 - 심장전기충격기 - 맥박조정기 - 기타전기식치료및요법기기		
27112202	- 환자모니터링기기 - 환자감시장치	27112103	- 혈압측정기기 - 전자혈압계
27112201	- 전기열치료기 - 적외선치료기 - 자외선치료기 - 온열치료기 - 레이저치료기 - 광선치료기	27112102	- 초음파진단기
		27112101	- 심전계
27191900	- 치과및치과기공소용기기의부품	27191sc1	- 치과용기기(임가공)
27191102	- 치과기공소용기기 - 이조형용기구(치과기공소용) - 용접기구(치과기공소용) - 연마기구(치과기공소용)	27191101	- 치석제거기 - 치과용유니트 - 치과용드릴엔진 - 치과용기기
27192900	- 정형외과용기기및보청기부품	27192sc1	-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임가공)
27192105	- 정형외과용기기 - 골절치료용기기(인조관절포함)		
27192104	- 인조장기(심장박동기등) - 인조안구 - 인공혈관 - 인공판막 - 인공신체	27192103	- 치과기공소의제품 - 인조치아(치과기공소) - 의치(치과기공소)
27193sc1	- 의료용가구(임가공)	27192102	- 치과용임플란트 - 임플란트(치과용)
		27192101	- 보청기

27193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대(의료용) - 안과의료기기 - 안과용의자 - 시력측정기 - 기타의료용가구 - 기계대(의료용가구) - 검안기(안과용기기) - 검안경(안과용기기) - 검사용테이블 - 검사용의자 - 각막계 	27193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대 - 병원침대
		2719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료기기부품 - 인공투석기 - 안과기기 - 산부인과기기 - 모식기 - 동물용의료기기 - 내시경 - 기타의료용기기 - 기계요법기기
27193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의자 	27199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호흡기(인공호흡기) - 산소호흡기
27199s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외기타의료용기기(임가공) 	27199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기(의료및실험실용)
27199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마스크 - 비행사용호흡기 - 방독면 - 기타호흡관련의료기기 	27199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기바늘 - 주사기및수혈세트 - 수혈세트

※ 출처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산업코드	산업명	산업코드	산업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3	한약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 출처 : 통계청